

제50차(2016년도) 중소기업 실태조사 조사표

조사대상 기간 : (Ⅰ. 일반실태) 및 (Ⅳ. 재무제표)는 2015. 1. 1 ~ 12. 31 (1년간 실적)
 (Ⅱ. 인력실태) 및 (Ⅲ. 사업전환실태)는 2015. 12. 31일 기준



※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.				
지역	업체번호	산업분류	규모	비고

사업자등록번호				-					
업체명		경영조직	① 법인		② 개인				
대표자	(①남, ②여)	대표자연령							년생
전화번호	() -	팩스번호	()						-
소재지	시/도	시/군/구	읍/면						로
주업종		설립년도							년

※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및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법정 지정통계입니다.
 ※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절대 보호됩니다.

안녕하십니까?

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,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7조,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제7조, 통계법 제17조에 의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매년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동 조사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, 자금, 인력, 사업전환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과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본 조사에 대한 응답은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임원 또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본 조사는 기업의 Ⅰ.일반실태, Ⅱ.인력실태, Ⅲ.사업전환실태, Ⅳ.재무제표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	한국기업데이터(주) 이영준 팀장, 전 화 : 02-2017-1812,	이메일 : survey2016@kedkorea.com 팩 스 : 02-6204-1921~3
-----	---	---



4. 공사실적 (2015년 1년간 실적)

1) 연간 건설공사 매출액

건설공사 매출총액(①+②+③+④=⑤+⑥=⑦+⑧)												천원
공중	① 토목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	② 건축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	③ 산업설비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	④ 조경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발주자	⑤ 민간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	⑥ 공공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내수 /수출	⑦ 국내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	⑧ 해외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
2) 공사대금의 평균 수취비율

현금 수취 비율 (A)				어음 수취 (B)			합 계 (A+B)				
순수 현금 수취		어음대체용 현금(현금성) 수취		어음 수취 (B)			합 계 (A+B)				
			%			%					%
							1	0	0		

※ 어음대체용 현금(현금성) 수취비율은 구매자금대출, 구매전용카드,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, 네트워크론을 합한 비율을 기재

3) 공사대금 수취시 현금과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

현금 수취기일				어음 평균 수취기일			
				어음 수취기일		어음 결제기일 (만기일)	
			일		일		일

※ 수취기일은 기성률에 따라 기성완료 후 기성금을 어음으로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의미

5. 하도급거래

“하도급거래”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시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,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.

1) 1년간 하도급 공사 매출액

2015년 1년간 하도급 공사 매출액(①+②)											천원
① 대기업 하도급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② 중소기업 하도급 공사 매출액											천원

2) 귀사가 원도급업자로부터 지원(협력) 받은 사항은?

- ① 기술지원
- ② 인력파견
- ③ 자금지원
- ④ 특허지원
- ⑤ 자재제공
- ⑥ 장비지원
- ⑦ 자본참여
- ⑧ 기타()
- ⑨ 해당없음

3) 귀사가 원도급업자와 하도급거래시 겪은 애로사항은?

- ①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
- ② 어음지급 후 만기도래시 미결제
- ③ 구두지시 후 시공비용 불인정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
- ⑤ 하도급대금의 일방적 감액
- ⑥ 공사대금(기성금) 지급 지연
- ⑦ 계약조건에 부당한 특약 설정
- ⑧ 기간연장/설계변경/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
- ⑨ 기타()

II. 인력실태 (2015. 12. 31일 현재)

○ **현 인원** : 2015. 12.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(내·외국인 불문, 현장일용직 제외)
 ※ 현 인원 제외대상 : 현장일용직, 타 업체로부터 인력파견 및 용역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는 근로자 - 다만, 파견 및 용역업체인 경우에는 외부에 파견한 근로자를 '현 인원'에 포함하여 기재

○ **비정규직 범위**

- ① **한시적 근로자** :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(계약직 근로자)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
- ② **단시간 근로자** :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
- ③ **특수형태 근로종사자** :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
- ④ **가정내 근로자** : 재택근무, 가내하청과 같이 사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
- ⑤ **일일근로자** : 근로계약 없이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,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

○ **부족인원** : 2015. 12. 31일 현재 당해 회사가 정상가동 또는 외부수요(주문)에 부응하기 위해 충원이 필요한 인원

○ **채용계획인원** : 2016.1.1일부터 2016.12.31일 사이에 기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

○ **직종구분**

사 무 · 관 리 직	인사, 기획, 경리, 비서 등 직접적으로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자(경영자, 임원 포함)
기 술 · 연 구 직	연구개발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
기 능 · 단 순 노 무 직	장비조작/정비/설치 등의 시공과정에 참여하거나 단순직무에 종사하는 자
판 매 (공 무) 직	시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견적, 입찰 등 공사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
기 타 종 사 자	시공과 관련없는 조리, 통근차량 운전 등에 종사하여 건설활동을 지원하는 자 등

1. 직종별 인력현황 (현장일용직 제외)

구 분	현 인 원 (명)						부족인원 (명)	채용계획 인원 (명)
	정규직(A)		비정규직(B)		합계(A+B)			
	남	여	남	여	남	여		
① 사 무 · 관 리 직								
② 기 술 · 연 구 직								
③ 기 능 · 단 순 노 무 직								
④ 판 매 (공 무) 직								
⑤ 기 타 종 사 자								
계								

※ 1인이 다수의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, 당해 인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분류

문2~문3의 합계는 문1의 현인원의 남녀 '합계(A+B)'의 '합계'가 일치하도록 기입해 주세요

2. 재직연수별 인력현황

구 분		1년 미만	1 이상-3년 미만	3년 이상-5년 미만	5년 이상-10년 미만	10년 이상	합계
현인원 (명)	남						
	여						
	합계						

3. 연령별 인력현황

구 분		10대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 이상	합계
현인원 (명)	남							
	여							
	합계							

4. 학력별 인력현황

구 분	중졸이하	고졸	전문대졸	대졸	대학원졸 이상	합계
현인원(명)						

5. [문1에서 부족인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] 인력확보가 어려운 주요 이유는?

- ① 취업지원자가 없음
- ② 지원자 중 직무능력을 갖춘 자가 없음
- ③ 근무여건 열악(임금, 작업환경, 복지환경 등)
- ④ 해당 직종·업체의 장기발전가능성이 낮음
- ⑤ 타사업체의 인력유치 경쟁 때문
- ⑥ 회사 주변의 문화·복지시설 부족 등
- ⑦ 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해서
- ⑧ 출퇴근 불편

6. 귀사의 지난 1년간(2015.1.1~2015.12.31) 이직자/입직자 수는 직종별로 몇 명이었습니까?

직 종	①사무·관리직	②기술·연구직	③기능·단순노무직	④판매(공무)직	⑤기타 종사자	합계
이직자수(명)						
입직자수(명)						

* 이직자 : 지난 1년간 고용계약종료, 자발적 퇴직, 정년퇴직, 해고,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체를 나간 근로자

* 입직자 : 지난 1년간 신규채용, 경력채용, 복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체로 들어온 근로자

7. 귀사는 지난 1년간 이직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?

- ① 임금 인상
- ② 합숙훈련 및 단합대회 실시
- ③ 다양한 연수·교육프로그램 제공
- ④ 대학진학 등 교육기회 지원
- ⑤ 멘토링프로그램 시행
- ⑥ 경력개발 경로제시
- ⑦ 사내 동호회 활성화
- ⑧ 기타 ()

III. 사업전환실태 (2015. 12. 31일 현재)

다음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¹⁾을 추가하거나 전환을 추진하는 '사업전환'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.

1) 새로운 업종이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말함(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은 제외)

※ 정부에서는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자금융자, 컨설팅, 세제지원, 고용안정지원, 정보제공 등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1. 귀사는 최근 3년 이내 기존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(또는 전환)하는 사업전환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사업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까?

- ① 사업전환 완료
- ② 현재 사업전환 진행중
- ③ 현재 사업전환계획 마련 중
- ④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사업전환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
- ⑤ 앞으로도 사업전환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 (문6으로 이동)

2. 귀사가 추진한(추진 중, 추진 예정인) 사업전환 형태는 무엇입니까?

- ① 업종전환(기존 영위업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 전환하는 경우)
- ② 업종추가(기존 영위업종의 비중을 유지하거나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)

3. [문1의 ①에 응답한 경우에만 기재] 사업전환을 통해 귀사는 어떤 경영성과를 얻었습니까?

매 출 액	① 증 가	② 변동 없음	③ 감 소
영 업 이 익	① 증 가	② 변동 없음	③ 감 소
종 업 원	① 증 가	② 변동 없음	③ 감 소
부 가 가 치	① 증 가	② 변동 없음	③ 감 소

4. 귀사가 사업전환을 추진한(추진 중 또는 추진예정 포함)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

- ① 새로운 성장활력 확보 필요
- ② 주력업종의 수익성 저하
- ③ 주력업종의 성장성 저하
- ④ 동종업종내 과당경쟁
- ⑤ 대체품 수입에 의한 경쟁력 약화
- ⑥ 발주업체 및 협력업체 등의 요청
- ⑦ 기타 ()

5. 사업전환 추진시 주요 애로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새로운 거래선 확보 및 판로 미확보
- ② 신규업종에 대한 전문기술 및 정보 부족
- ③ 인력 확보 곤란
- ④ 자금 조달 곤란
- ⑤ 복잡한 행정절차, 정부의 각종규제
- ⑥ 자산취득, 매각 등에 따른 세금 부담
- ⑦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기업 신인도 저하
- ⑧ 주식교환 및 M&A 절차의 어려움
- ⑨ 기타 ()

6. [문1의 ⑤에 응답한 경우] 앞으로도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계시다면,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①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못느낌
- ② 사업전환시 소요자금 충당이 어려움
- ③ 업종전환시 판로 개척에 어려움
- ④ 신규 아이템의 기술개발에 어려움
- ⑤ 유망 업종의 정보 부족
- ⑥ 경영진의 의지 부족 및 종업원의 반대
- ⑦ 기타 ()

IV.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(※사본 제출시 작성 생략 가능)

1. 재무상태표(또는 대차대조표)

항 목	금 액 (천 원)	
	당 기 (2015.12.31일 현재)	전 기 (2014.12.31일 현재)
1) 유동자산 (=2+7)		
2) 당좌자산 (=3+4+5+6)		
3) 현금 및 현금성자산		
4) 단기투자자산		
5) 매출채권 (외상매출금+받을어음)		
6) 기타 (3,4,5 외 당좌자산 합계)		
7) 재고자산 (=8+9+10)		
8) 상품 및 제품		
9) 원재료		
10) 기타 (8,9 외 재고자산 합계)		
11) 비유동자산 (=12+15+22+26)		
12) 투자자산 (=13+14)		
13) 장기투자증권 (주식,회사채,출자금 등 합계)		
14) 기타 (13 외 투자자산 합계)		
15) 유형자산 (=16+17+18+19+20+21)		
16) 토지		
17) 건물·구축물		
18) 기계장치		
19) 선박·차량·운반구		
20) 건설중인 자산		
21) 기타 (16~20 외 유형자산 합계)		
22) 무형자산 (=23+24+25)		
23) 산업재산권 (특허,실용실안,상표,의장권)		
24) 개발비		
25) 기타 (23,24 외 무형자산 합계)		
26) 기타비유동자산 (=27+28)		
27) 이연법인세자산		
28) 기타 (27 외 기타비유동자산 합계)		
29) 자산총계 (=1+11=46)		
30) 유동부채 (=31+32+33+34)		
31) 매입채무 (외상매입금+지급어음)		
32) 단기 차입금		
33) 유동성 장기부채		
34) 기타 (31,32,33 외 유동부채 합계)		

항 목	금 액 (천 원)	
	당 기 (2015.12.31일 현재)	전 기 (2014.12.31일 현재)
35) 비유동부채 (=36+37+38+39)		
36) 회사채		
37) 장기 차입금		
38) 부채성 충당금 (퇴직급여충당금 등)		
39) 기타 (36,37,38 외 비유동부채 합계)		
40) 자본 (=41+42+43+44+45)		
41) 자본금		
42) 자본잉여금		
43) 자본조정		
44) 기타포괄손익누계액		
45) 이익잉여금(또는 결손금)		
46) 부채 및 자본총계 (=30+35+40)		

2. 손익계산서

항 목	금 액 (천 원)	
	당 기 (2015.1.1.~2015.12.31)	전 기 (2014.1.1.~2014.12.31)
1) 매출액		
2) 매출원가		
3) 매출총손익 (=1-2)		
4) 판매비와 관리비 (=5+6+7+...+17+18+19)		
5) 급여 (각종 급여, 임금, 상여 등 합계)		
6) 퇴직급여 (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)		
7) 복리후생비 (경조비 등 포함)		
8) 임차료		
9) 접대비 (카드접대비 등 각종 접대비)		
10) 감가상각비		
11) 세금과 공과 (협회비, 회비 등 포함)		
12) 광고선전비 (판촉비 포함)		
13) 경상개발비·연구비		
14) 대손상각비 (대손충당금전입액 포함)		
15) 통신비		
16) 운반·하역·포장·보관비		
17) 보험료		
18) 무형자산상각비 (각종 무형자산상각액 합계)		
18-1) (무형자산 상각비 중 개발비 상각액)		
19) 기타 (5~18 외 판매관리비 합계)		
20) 영업손익 (=3-4)		
21) 영업외 수익 (=22+23+24)		
22) 이자수익		
23) 외환차익 및 외화환산이익		
24) 기타 영업외 수익 (22,23 외 수익 합계)		

항 목	금 액 (천 원)	
	당 기 (2015.1.1.~2015.12.31)	전 기 (2014.1.1.~2014.12.31)
25) 영업외 비용 (=26+27+28)		
26) 이자비용		
27)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		
28) 기타 영업외 비용 (26,27 외 비용 합계)		
29) (소득세)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(=20+21-25)		
30) 계속사업손익 법인세(소득세)비용		
31) 계속사업손익 (=29-30)		
32) 중단사업손익		
33) 당기 순손익 (=31+32)		

3. 공사원가명세서

항 목	금 액 (천 원)	
	당 기 (2015.1.1.~2015.12.31)	전 기 (2014.1.1.~2014.12.31)
1) 당기 총 공사비용 (=2+3+4)		
2) 재료비		
2-1) (재료비 총액 중 당기 구매액)		
3) 노무비		
4) 현장경비 (=5+6+7+...+13+14+15)		
5) 전력비, 가스수도비(연료비, 유류비 포함)		
6) 운반·하역·포장·보관비		
7) 감가상각비		
8) 수선비		
9) 외주가공비 (용역비, 위탁비)		
10) 소모품비 (소모성 공구비 등 포함)		
11) 세금과 공과		
12) 임차료		
13) 복리후생비		
14) 경상개발비		
15) 기타 경비(5~14 외 경비 합계)		
16) 기초 미성공사		
17) 기말 미성공사		
18) 타계정 대체액		
19) 당기 공사원가 (=1+16-17-18)		

* 3)노무비는 건설현장 근로자 기준

-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-

응 답 자			
성 명		소속부서	
직 위		전화번호	

■ 조사자 성명 : (인) ■ 조사책임자 성명 : (인)